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제 4조 [특약의 효력]

제 5조 [특약의 소멸]

제 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8조 [주계약 약관 및 규정의 준용]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변경에 따른 정산액 분할납입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이 특약은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 금액 중 제5조(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정산액(이하 「정산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와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체결됩니다.

제 4조 [적용대상 계약]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
2.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
3.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
4. 주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
5. 단체취급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6.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

7.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

제 5조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약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주계약 또는 특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갱신되는 특약의 정산액은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③ 이 특약을 가입한 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특약의 효력]

- ① 제3조(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때(이하「체결일」이라 합니다)부터 “보험계약”은 정산액을 일시에 납입한 것과 동일한 계약변경 효력을 가집니다.
- ② 계약자는 정산액을 대신하여 분할납입기간 동안 분할납입금액에 체결일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이하 「최종분할납입금액」이라 합니다)을 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납입금액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③ 제2항의 납입기일은 “체결일” 이후부터 도래하는 “보험계약”의 납입기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 완료 이전에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직전 최종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7조 [특약의 소멸]

- ①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제6조(특약의 효력) 제8항에서 정한 일시 납입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조항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10조 [주계약 약관 및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